

#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문제

과 목 : 대지계획

제2과제(대지분석 · 대지조닝 · 대지주차)

배점 35 / 100

제 목 : 주민복지시설의 최대 건축가능 규모  
및 주차계획

**1. 과제개요**

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인 계획대지에 주민복지 시설을 신축하고자 한다.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이 가능한 최대 규모와 주차계획을 하시오.

**2. 대지개요**

- (1) 용도지역 : 제3종 일반주거지역
- (2) 대지면적 : 864m<sup>2</sup>
- (3) 건 폐 율 : 50% 이하
- (4) 용 적 률 : 300% 이하
- (5) 건축물 최고 높이 : 25m 이하  
단, 파라펫 높이는 고려하지 않음

**3. 계획조건 및 고려사항**

- (1)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벽 두께를 고려하지 않고,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.
  - ① 도로경계선 : 1m 이상
  - ② 인접대지경계선 : 1m 이상
- (2)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다음과 같이 이격한다.
  - ① 높이 9m 이하 부분 : 1.5m 이상
  - ② 높이 9m 초과 부분 :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/2 이상
- (3)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계획대지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인접대지 ㉔가 접하는 부분은 두 대지 높이 차이의 1/2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(4) 각 층의 층고는 4m이고, 지상 1층 바닥레벨은 대지레벨과 동일하다.
- (5) 계획대지에 인접한 보호수목의 중심으로부터 9m 까지는 보호수목 보존지역이며,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.



(6) 필로티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.

**(7) 주차계획**

- ① 주차대수 : 지상 12대 이상 (장애인주차 2대 포함)  
단, 필로티 주차 가능
- ② 주차단위구획
  - 일반형 주차 : 2.5m × 5.0m
  - 장애인 주차 : 3.5m × 5.0m
- ③ 차량 진출입로 및 차로 너비 : 6.0m 이상
- ④ 차로, 주차구획의 이격거리
  - 도로경계선 : 1m 이상
  - 인접대지경계선 : 1m 이상
  - 건축물 : 제한 없음

**4. 도면작성요령**

- (1) 배치도에는 2층~최상층 건축영역을 <보기>와 같이 표기하고, 중복된 층은 그 최상층만 표기한다.
  - (2) 1층 평면 및 주차계획도에는 1층 건축영역과 주차 계획을 표기한다.
  - (3) 단면도에는 제시된 <A-A> 단면의 최대 건축영역을 표기한다.
  - (4) 각종 제한선, 이격거리, 층수 및 치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.
  - (5) 차로, 보도, 주차구획 등은 1층 평면 및 주차계획도에 실선으로 표현하며, 상층부에 건축물이 돌출되는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현한다.
  - (6) 단위 : m
  - (7) 축척 : 1/300
- <보기>

출수층	
짜수층	

**5. 유의사항**

- (1) 답안작성은 반드시 흑색연필로 한다.
- (2)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한다.

<대지 현황도> 축척 없음

